

# 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상정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30조 → 제41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조례 개정 사유는?	<input type="radio"/>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관련 규정 등을 정비코자 안건을 제출하였음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6호
의결 년월일	2008. 1. 23 (제141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. 10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30조 → 제41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## 부천시지방재정투·용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재정투·용자사업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방재정투·용자사업심사조례”를 “부천시 지방재정투·용자사업 심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,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·용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”을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 및 「지방재정투·용자사업 심사 규칙」 제10조”로 하고, “심사에 관하여”를 “심사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타당성등”을 “타당성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10억원 이상”을 “10억원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절차등”을 “절차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·중앙행정기관”을 “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재해복구등”을 “재해복구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조례에 의한”을 “조례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5인이내”를 “15명 이내”로 하고, “3분의 2이상”을 “3분의 2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”을

“경험과 식견을 갖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간사 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”을 “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”로 하고, “예산의 범위안”을 “예산의 범위 안”으로 하며, “여비등”을 “여비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당해사업”를 “해당 사업”으로 하고, “용역전”을 “용역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단서부분 중 “연도중”을 “연도 중”으로 하고, “당해 회계연도”를 “해당 회계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제2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통보등”을 “통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3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완료한후”를 “완료한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”을 “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등”을 “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”을 “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당해 사업”을 “해당 사업”으로 하며, “여부등”을 “여부 등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1호 중 “투자심사후”를 “투자심사 후”로 하며, “50퍼센트 이상”을 “5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중 “투자심사후에 3년 이상”을 “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투자심사후”를 “투자심사 후에”로 하고, “다음 각목”를 “다음 각 목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“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이상”을 “투자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이상”을 “투자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이상”을 “투자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지방재정관련계획”을 “지방재정 관련 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“수행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수행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 지방재정관련”을 “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1.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·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</p> <p>2. <u>재해복구등 원상복구</u>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제3조(투자심사기준)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<u>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제4조(투자심사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15인 이내</u>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<u>3분의 2이상</u> 포함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③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<u>학식과 경험이 풍부</u>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위원회에 <u>간사 1인</u>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된다.</p> <p>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안</u>에서 수당 및 <u>여비등</u>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1. -----<u>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</u>-----</p> <p>2. <u>재해복구 등</u>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투자심사기준) --<u>조례에 따른</u>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투자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15명 이내</u>----- --<u>3분의 2 이상</u>-----.</p> <p>③ -----<u>경험과 식견을 갖춘</u>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간사 1명</u>-----.</p> <p>⑥ <u>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</u> <u>중에서</u>----- -----<u>예산의 범위 안</u>----- -----<u>여비 등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투자심사의 절차)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<u>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</u>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<u>연도중에</u>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<u>당해 회계연도 사업에</u>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사업주관 국장 및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<u>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장(이하 "심사의뢰자"라 한다)</u>은 <u>제2조제1항의 규정</u>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투자심사의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<u>해당 사업</u>-----<u>용역 전</u>----- ----- -----<u>연도 중</u>----- ----- -----<u>해당 회계연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----- -----<u>제2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) ① <u>제5조제3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를 <u>완료한후</u>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</p>	<p>제6조(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) ① <u>제5조제3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<u>완료한 후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상반기 심사는 5월 5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 심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<u>적정·조건부추진·재검토</u> 또는 <u>부적정</u>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<u>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적정</u> :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<u>예산반영등</u> <u>재원조달대책</u>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</p> <p>2. <u>조건부추진</u> :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<u>선행절차이행</u> 및 <u>재원조달대책등</u>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</p> <p>3. <u>재검토</u> : 사업의 규모, 시기, <u>재원조달대책</u> 및 <u>채무상환계획</u>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7조(재심사)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<u>당해</u> <u>사업의 타당성 여부등</u>에 대한 재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투자심사후에</u> <u>사업비가 50퍼</u> <u>센트이상</u> 늘어난 사업</p> <p>2. <u>투자심사후에</u> <u>3년이상</u>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u>선행절차 이행 및</u> <u>재원조달 대책 등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</u> <u>획 등</u>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재심사)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</u>-----<u>해당</u> <u>사업</u>-----<u>여부 등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투자심사 후</u>-----<u>50퍼</u> <u>센트 이상</u>-----</p> <p>2. <u>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</p> <p>가. 지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</p> <p>나. 도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</p> <p>다.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</p> <p>제8조(심사결과에 대한 조치) ①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 운영)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양여금의 지원신청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3. 투자심사 후에-----다</p> <p>-----다</p> <p>음 각 목-----</p> <p>가. -----투자사업 중 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-----</p> <p>나. -----투자사업 중 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-----</p> <p>다. -----투자사업 중 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-----</p> <p>제8조(심사결과에 대한 조치) ① - -----제6조에 따른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)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수행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-----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----- -----.</p>